

의안번호	2200223
의 퇴 인	민병덕 의원
회 답 일	2024. 8. 19.
추 계 번 호	24A05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제2항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¹⁾ 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 중에 제22조제3항 ²⁾ 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기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의2제2항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

2.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기간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 대출 금액을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내용
-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기금을 재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¹⁾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음
 - * [참고자료 1]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현황
 -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는 코로나19 직접대출,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대리대출)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및 3년간 분할 상환으로 모두 동일함
 - 다만,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²⁾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
 - 개정안은 현행보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

1) 참고: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비교

구분	직접대출(Direct Loan)	대리대출(On Lending)
개념	· 정부(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직접 융자해주는 방식	· 금융기관이 일정수수료(1% 내외)를 받고 정부(또는 기금관리주체)의 융자업무를 대리하는 방식(보증기관 보증서 필요)
장점	· 정책자금 취지에 맞는 지원대상(특히 저신용자 위주) 선별 가능 · 지원조건 설정 및 변경 용이 · 소상공인 대출절차 및 서류간소화 · 보증수수료(1% 내외) 부담 감소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최소화(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서 부실관리)
단점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분의 재정 충당(보조) 필요 · 직접대출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조직 운영, 인건비, 시스템 관리 등)	· 정책자금의 효율적 통제 및 관리 한계 ·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중심의 운용방식으로 저신용자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 ·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1% 내외) · 은행수수료 발생(1% 내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 직접대출을 정상 상환 중이나,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고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소상공인

□ 개정안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제도가 운영될 경우 ①용자 원금 및 이자 수입에 대한 회수 실적이 저하되어 기금수입이 감소하거나, ②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부담 증가로 인해 수수료율이 인상되어 기금지출이 증가할 가능성³⁾

- 용자 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회수액은 기금수입⁴⁾으로 수납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대출채권 미회수 위험으로 회수 실적이 저하되어 기금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대리대출 제도 운영 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의 사업비⁵⁾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 직접대출과 달리 대리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의 일부(1% 내외)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용자업무를 대리하는 방식이므로 상환기간 연장 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 － 만약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채권의 위험도나 채권 회수를 위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므로 기금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 중 장기분할상환 승인 예상액, ②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대출채권의 회수율 하락분, ③대리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상분과 함께 ④장기분할상환 승인액에 대한 상환 스케줄 등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엄밀한 의미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채권의 위험 및 관리 부담 증가에 따른 제반 비용과 이자수입 및 상환조건 등을 바탕으로, 장기분할상환 승인 전후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산출할 수 있음. 다만, 현 시점에서 이를 추계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재정부담의 증가(재정수입의 감소 및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만을 설명함

4) 직접대출의 원금은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754) 목, 이자수입은 기타민간이자수입(544) 목으로 수납
대리대출의 원금은 통화금융기관용자원금회수(752) 목, 이자수입은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542) 목으로 수납

5) 대리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용자)(4151-301)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대출채권 회수 실적 저하에 따른 기금수입 감소액의 경우 장기분할상환 승인된 대출잔액 중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나, 대출잔액 중 장기분할상환 승인액의 비율(장기분할상환 신청 수요 및 승인율)과 대출채권의 연도별 회수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부담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데 따른 기금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기분할상환 제도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지출 증가분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나, 수수료 인상폭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공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 예정 원금은 2024년⁶⁾ 9,167억원, 2025년 2조 589억원, 2026년 1조 1,659억원 등임
 - * [참고자료 2]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 예정 원금
- 이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운영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6)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환예정원금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현황

구분	금리/한도	대상	상환조건	대출유형	지원 실적		현황	
					지원금액 (억원)	지원대상 (개사)	대출잔액 (억원)	차입자 (개사)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연 1.5% 고정 /2~7천만원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저신용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리대출	21,815	58,424	8,569	45,686
코로나19 직접대출	연 1.5% 고정 /1천만원	(4등급~) 소상공인		직접대출	7,723	73,517	3,574	66,865
1천만원 긴급대출	연 2.9% 고정 /1천만원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저신용(6 등급~) 소상공인		직접대출	604	6,829	325	5,816
2천만원 긴급대출	연 2.0% 고정 /2천만원	소상공인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개시)		직접대출	3,373	17,699	1,742	15,737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용자	연 1.9% 고정 /2천만원	집합금지업종 중 사업장 유상임차 소상공인		직접대출	8,638	50,716	5,675	65,291
소상공인 고용연계 용자	연 2.0% 고정 /1천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5,751	39,204	4,243	42,201
저신용 소상공인 용자	연 1.5% 고정 /1천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중 저신용(5등급~) 소상공인		직접대출	9,104	54,397	7,152	60,135
일상회복 특별용자	연 1.0% 고정 /2천만원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직접대출	6,237	31,183	5,325	29,980
희망대출	연 1.0% 고정 /1천만원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매출감소한 저신용(6등급~) 소상공인		직접대출	10,555	105,548	9,290	98,664
합계					73,800	437,517	45,895	430,375

주: 대출잔액은 2024년 6월말 기준 미상환 원금, 차입자는 2024년 6월말 대출원리금을 보유한 사람을 말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2]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 예정 원금

구분	대출유형	현황		상환 예정 원금(억원)		
		대출잔액 (억원)	차입자 (개사)	2024	2025	2026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대리대출	8,569	45,686	1,477	5,818	667
코로나19 직접대출	직접대출	3,574	66,865	1,079	1,131	444
1천만원 긴급대출	직접대출	325	5,816	82	152	4
2천만원 긴급대출	직접대출	1,742	15,737	486	994	16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용자	직접대출	5,675	65,291	1,321	2,646	1,438
소상공인 고용연계용자	직접대출	4,243	42,201	896	1,802	1,364
저신용 소상공인 용자	직접대출	7,152	60,135	1,338	2,777	2,456
일상회복특별용자	직접대출	5,325	29,980	983	1,982	1,983
희망대출	직접대출	9,290	98,664	1,505	3,287	3,287
합계		45,895	430,375	9,167	20,589	11,659

주: 1. 대출잔액은 2024년 6월말 기준 미상환 원금, 차입자는 2024년 6월말 대출원리금을 보유한 사람을 말함

2. 2024년 상환 예정 원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환 예정 원금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